

'10년 시·도교류 추진일정 및 우선순위 기준

□ 추진일정

-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계획(시달) : '10. 11. 08
- 교류제한자 및 우선순위 기준 공개(홈페이지) : '10. 11. 08
- 전직원 대상 교류희망자 접수(소방서별) : '10. 11. 10
- 연고지 배치 대상자 명부 제출(서 → 본부) : '10. 11. 11
- 전출 우선순위 결정(도 인사교류위원회) : '10. 11. 12
- 시도교류 대상자 명부 제출(본부 → 청) : '10. 11. 12
- 시도교류 대상자 조정·선정(청) : '10. 11. 22
- 교류 대상자 통보(청) 및 인사발령 : '10. 11. 25

□ 교류제한자 (인사교류 규정 제5조)

구 분	교 류 제 한
1	■ 징계처분(요구), 직위해제, 휴직,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
2	■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
3	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※ 특채자는 1년(또는 5년)동안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전보제한
4	■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('10.10월말기준)
5	■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

□ 우선순위 (인사교류 규정 제6조)

순 위	전 출 기 준
1순위	1-1 본인, 가족의 질병(중증)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 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1-2 기타 위와 동등한 사유로 다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1-3 최근 2년 이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
2순위	2-1 노부모 공양, 부부별거,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 애로사항 2-2 기타 위와 동등한 사유로 다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2-3 최근 2년 이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
3순위	3-1 비연고(출생지, 초임지) 지역 장기근무 3-2 최근 2년 이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
4순위	4-1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-2 최근 2년 이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
공 통	※ 상기 기준 적용에 앞서 과거에 연속하여 시·도간 인사교류 신청 미반영 된 자는 신규 신청자에 우선함(단, 1순위자는 제외)
주 의 사 항	※ 기존 인사교류 희망 시·도와 다른 지역을 금번 교류희망지로 신청시 → 과거 교류희망 신청 시도의 기득권이 없음(신규신청자로 간주) 예) '07년 상반기 “서울” 로 신규 신청 → '08년 신청시 “경기” 신청